

# 부천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3월 4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3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3. 14) 상정
- 제1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3. 14) 원안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남 상 수)

가. 제안이유

-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0381호, 2007. 11. 13.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의 전액을,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2조)
- 여비는 여비지급구분표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여행자의 일비·숙박비·식비 및 외국에 부임하거나 국외출장명령을 받은 자의 준비금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함.(안 제3조)

###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월액여비 지급 기준은?	○ 출장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상일 경우 전액 지급하고, 15일 미만일 경우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다음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

###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음

#### 나. 반대토론

○ 없음

###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 6. 소수의견

○ 없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부천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23호
의결 년월일	2008. 3. 20 (제142회)

제출년월일 : 2008. 3. 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 제안이유

-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0381호, 2007. 11. 13. 공포·2008. 1. 1.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의 전액을,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2조)
- 나. 여비는 여비지급구분표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여행자의 일비·숙박비·식비 및 외국에 부임하거나 국외출장명령을 받은 자의 준비금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함.(안 제3조)

## □ 칙 부 : 부천시여비조례

## 부천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여비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적으로 관할구역 내에 출장하는 부천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따라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외에 출장하는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하는 일수는 합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및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여비는 별표 1의 여비지급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여행자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 외국에 부임하거나 국외출장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준비금을 지급한다.

제4조(준용)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따르되,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영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절차는 거치지 아니한다.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부천시 관용차량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영 제27조의 규정은 따라 쓰지 아니한다.
6. 영 제2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절차와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청취 절차는 각각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따라 쓰지

아니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해 당 공 무 원
제1호	가. 시장
	나. 2·3급공무원, 2·3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자에 한한다), 소방감·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고위공무원단 다등급부터 마등급까지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제2호	가. 4·5급공무원, 4·5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별표 1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위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2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지도관, 소방정·소방령,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및 전임강사
	나. 위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

[별표 2]

**국외여비정액표(제3조제2항 관련)**

(단위: 미불화)

구 분	등 급	일 비	숙박비	식 비
1. 별표 1의 제1호가목 해당자	가	40	205	133
	나	40	149	99
	다	40	118	72
	라	40	100	61
2. 별표 1의 제1호나목 해당자	가	35	166	107
	나	35	120	78
	다	35	92	58
	라	35	79	49
3. 별표 1의 제2호가목 해당자	가	30	145	81
	나	30	95	59
	다	30	70	44
	라	30	62	37
4. 별표 1의 제2호나목 해당자	가	26	129	67
	나	26	87	49
	다	26	64	37
	라	26	56	30

「비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동경,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나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2)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2)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 (3) 유럽주: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 (4) 중동·아프리카주: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 (1) 아시아주·대양주: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 (2)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3) 유럽주: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3]

국외준비금지금액표(제3조제3항 관련)

(단위: 미불화)

구 분 여행기간별	준 비 금		
	여행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여행기간이 15일 이상 30일 미만인 경우	여행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1. 별표 1의 제1호가목 해당자	150	180	210
2. 별표 1의 제1호나목 해당자	140	170	195
3. 별표 1의 제2호가목 해당자	130	155	180
4. 별표 1의 제2호나목 해당자	120	145	170

비고: 재외공관에 부임 시에는 여행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로 보아 지급한다.

## (현행조례)

### 부천시여비조례

- [1973. 07. 01 조례 제12호]
- [1973. 08. 11 조례 제98호]
- [1975. 01. 06 조례 제138호]
- [1975. 01. 15 조례 제141호]
- [1975. 05. 13 조례 제152호]
- [1977. 11. 12 조례 제280호]
- [1978. 01. 31 조례 제293호]
- [1978. 07. 20 조례 제306호]
- [1979. 04. 03 조례 제337호]
- [1983. 01. 07 조례 제565호]
- [1988. 05. 10 조례 제887호]
- [1989. 05. 01 조례 제962호]
- [1991. 01. 07 조례 제1088호]
- [1998. 10. 10 조례 제1590호]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시장은 부시장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 제4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1]”은 “동규칙 [별표1]”로 본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제1호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부칙 (1973.07.01 조례 제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8.11 조례 제98호)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1.06 조례 제138호)

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5.01.15 조례 제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5.13 조례 제1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공무원이 공무로 출장 할 때 에는 별표 1의 지급구분중 당해공무원의 봉금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1977.11.12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7.20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9.04.03 조례 제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01.07 조례 제5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지방전문직 공무원(지방계약직) 국내여비지급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8.05.10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5.01 조례 제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1.07 조례 제1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